

진료 의뢰 및 업무 협약서

조은방문요양센터(이하 갑이라 한다)와 닥터봉정민내과의원(이하 을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.

제 1 조 (목적) '갑'과 '을'은 상호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통해 공동의 발전에 기여하고,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이행한다.

제 2 조 (기본원칙) '갑'과 '을'은 상호 호혜 및 협력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서에 따른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.

제 3 조 (협약내용) '갑'과 '을'은 다음 내용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.

가. '을'은 '갑'이 의뢰한 환자에 대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.

나. '갑'은 '을'에게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'을'의 행정부서를 통해 진료예약을 요청할 수 있다.

다. '갑'은 의뢰한 환자, 직원에 대하여 '을'의 진료, 검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.

바. '갑'과 '을'은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각종 대외 홍보 및 활동 등에 있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 4 조 (비밀보장) 양 기관은 상호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협약의 갱신) 본 계약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'갑'과 '을' 쌍방간에 협약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을 시,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재협약됨을 합의한다.

제 6 조 (협약의 해지)

가. '갑'과 '을'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나.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의를 지키지 않을 시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다. 해약 통보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기타)

가. 본 협약은 협약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나.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.

다. '갑'과 '을'은 상호 협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2월 21일

조은방문요양센터

센터장 조은정



닥터봉정민내과의원

대표원장 봉정민

